

지역난방 열공급 규정

(2023.07.01)



목 차

제 1 장 총 칙

- 제 1조 [목 적]—————
제 2조 [적용구역]—————
제 3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제 4조 [열공급지역]—————
제 4조의2 [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제 5조 [용어의 정의]—————

제 2 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 제 6조 [열사용 신청]—————
제 7조 [공급승낙]—————
제 8조 [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제 9조 [계약종별]—————
제 10조 [열수급계약의 성립,변경,계약기간]—————
제 11조 [명의의 변경]—————
제 12조 [사용자 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제 13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제 14조 [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채권,채무등]—————
제 14조의2 [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제 3 장 공급

- 제 15조 [공급기간 및 시간]—————
제 16조 [공급조건]—————
제 17조 [공급개시]—————
제 18조 [위약처리]—————
제 19조 [재산한계점]—————

- 제20조 [공급의 정지]—————
제21조 [공급정지의 해제]—————
제22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제23조 [손해배상의 면책]—————
제24조 [사용장소의 출입등]—————

제 4 장 시공 및 유지관리

- 제25조 [공사의 시공]—————
제26조 [계량기의 설치 및 검사]—————
제27조 [열사용시설의 공사]—————
제28조 [열사용시설의 운영]—————
제29조 [기계실 인입매설배관의 공사대행]—————

제 5 장 공사부담금

- 제30조 [공사비등의 부담원칙]—————
제30조의2 [재건축시의 공사비부담금]—————
제30조의3 [공사비부담금의 사용원칙]—————
제30조의4 [공사비부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제31조 [공사비부담금]—————
제32조 [공사비부담금의 청구 및 납부]—————
제33조 [공사부비부담금의 납부방법]—————
제34조 [연체료 및 조기열사용부담금]—————
제35조 [납부순위]—————
제36조 [공사비부담금의 정정]—————
제37조 [계산결과의 끝수 처리]—————
제38조 [정산]—————
제39조 [시설관리비등의 부담]—————

제 6 장 요 금

- 제40조 [요금의 적용개시 시기]————
- 제41조 [요금의 계산]————
- 제42조 [요금의 감면]————
- 제43조 [요금조정의 원칙]————
- 제43조의2 [요금조정]————
- 제44조 [요금정산]————
- 제45조 [시장기준요금]————
- 제46조 [요금조정절차]————
- 제46조의2 [요금검증]————
- 제47조 [검침일]————
- 제48조 [검침방법]————
- 제49조 [계산기간]————
- 제50조 [사용열량의 산정]————
- 제51조 [열사용량의 조정]————
- 제52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청구]————
- 제53조 [요금의 계산 착오등에 대한 시정]————
- 제54조 [기본요금의 정산]————
- 제55조 [보증금]————
- 제56조 [일할계산]————
- 제57조 [계산결과의 끝수처리]————

제 7 장 사용자의무

- 제58조 [열사용시설기준 등]————
- 제59조 [사용자의 의무]————
- 제60조 [손해배상 의무]————

제 8 장 안 전

- 제61조 [안전책임]————
- 제62조 [통보 등]————

제63조 [열사용시설의 개선]————

제 9 장 기 타

제64조 [관리인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제65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제66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의무]————

제67조 [위임]————

부 칙————

별 표

(별표 1) 계약종별 분류표————

(별표 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별표 3) 단위 연결열부하 기준표————

별지 서식

(별지서식 제1-1호) 열사용신청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1-2호) 열사용신청서(업무용, 공공용)————

(별지서식 제2-1호) 열사용(증설, 변경, 재사용)신청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2-2호) 열사용(증설, 변경, 재사용)신청서(업무용, 공공용)————

(별지서식 제3-1호)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3-2호)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업무용, 공공용)————

(별지서식 제 4호) 열수급계약 해지 신청서————

(별지서식 제5-1호)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공동주택용)————

(별지서식 제5-2호)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업무용, 공공용)————

(별지서식 제 6호) 점검필증————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무림파워텍주식회사(이하 "사업자"라 합니다)가 일반의 사용에 대하여 열을 공급할 때의 열요금, 공사비부담금, 공급조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적용구역)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공급구역(신고지역포함)에 적용하며 세부 공급구역에 대한 도면은 사업자가 비치합니다.

제3조 (규정의 신고 및 변경)

1. 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 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입니다.
2.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 이 규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이 규정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이 있을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조 (열공급지역)

열공급 지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 공고한 지역과 기타 허가지역(신고지역포함)으로 구분합니다.

제4조의2 (규정이외의 공급조건의 적용)

사업자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규정 이외의 공급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합니다.

제5조 (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거지역"이라 함은 열공급지역내에 있는 주거용 공동주택단지를 말합니다.
2. "업무지구"라 함은 열공급지역내에서 주거지역을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3. "열매체"라 함은 열을 전달하는 유체를 말합니다.
4. "열발생처"라 함은 보일러 및 터빈발전기 등 열 발생기기를 설치하여 열을 생산하는 사업자 소유의 열병합발전소를 말합니다.
5. "공급관"이라 함은 열발생처에서 생산된 열매체를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도로, 공동구 등에 부설하는 것으로서 열발생처로부터 사용관과 접속되는 지점까지의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6. “사용관”이라 함은 사용자가 공급관과 접속되는 지점으로부터 열매체를 받기 위하여 부설하는 배관과 그 부속기기를 말합니다.
7. “열공급시설”이라 함은 사업자의 열발생처로부터 생산된 열을 각 사용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수단인 열공급관, 공급관의 부속기기 등 열공급에 필요한 사업자 소유의 제반시설을 말합니다.
8. “열사용시설”이라 함은 사용관, 열교환설비, 사용관의 부속기기 등 열사용에 필요한 사용자 소유시설 및 사용자 공유의 제반시설을 말합니다.
9. “계량기”라 함은 열사용량을 계량하여 요금산정의 기초로 하기 위하여 사용자 기계실 등에 설치하는 거래용 열량계(유량부, 적산부 또는 온도감지기 등)를 말합니다.
10. “사업자”라 함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의 허가를 받은자를 말합니다.
11. “사용자”라 함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열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중인 자를 말합니다.
12. “원격지침”이라 함은 계량기에 표시된 사용열량을 사업자측의 신호전송설비 등을 이용하여 검침하는 것을 말합니다.
13. “열공급개시”라 함은 공사비부담금 잔금(할부금 제외)을 완납한 사용자에 대하여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를 개방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증설사용”이라 함은 열수급계약에 따라 열공급이 개시된 이후 열수급계약상의 계약 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증가하는 추가적인 열사용을 말합니다.
15. “재사용”이라 함은 열공급개시 후 열공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사용자가 동일장소에 다시 열을 수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변경사용”이라 함은 계약상 종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17. “계약면적”이라 함은 주택용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기본요금) 부과기준이 되는 면적으로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계약면적 산정은 별표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및 별표3 열요금표에서 정한 산정방식으로 합니다.
18. “난방비수기”라 함은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난방용 열수요가 적은 기간으로서 매년 5 월 1일부터 9월30일까지를 말합니다.
19. “1구내”라 함은 담, 울타리, 도로 등으로 구분되거나 또는 단일 회계주체에 의하여 관리되는 구역을 말합니다.
20. “신축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되지 않은 건물을 말합니다.
21. “기존건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2조에 의한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임시사용이 승인된 건물을 말합니다.
22. “착공일”이라 함은 열사용신청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1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관청에 신고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실제 착공일이 착공예정일과 다름을 입증할 경우 실제 착공일로 합니다.
23. “공동주택”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에서 정하고 있

는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말합니다.

24. “건물”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에서 공동주택 이외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25. “연결열부하”라 함은 열중계처에 대한 1차측 사업자 공급부하로서 사업자의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사용자와의 계약용량을 말합니다.

제 2 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 2 장 열사용신청과 열수급계약

제6조 (열사용신청)

1. 새로이 열을 사용하고자 하거나 열의 증설사용, 재사용 또는 변경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 (이하 "열사용신청자" 라고 합니다)는 사업자가 정하는 별지 제1-1, 1-2호, 2-1, 2-2호 서식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의한 열사용신청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릅니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후 14일 이내에, 건물은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 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를 말합니다)의 명의(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 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

- ①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
- ② 열요금 납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단독명의

(2) 건물

- 가. 신축건물의 경우 : 건축주, 공사시행자 등 이에 준하는 자와 공사시공자의 명의
- 나. 기존건물의 경우

- ① 소유자(관리단, 단지관리단)의 명의
-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이 소유한 건물을 하위 행정관청이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하위 행정관청의 명의(하위 행정관청에 준하는 자를 포함)
- ③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지 않아 임차인 위주로 건물관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인 위주의 사단, 조합 등의 명의
- ④ 소유자 등이 건물관리업체로 열수급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경우에는 건물관리업체의 명의
- ⑤ 요금, 공사비부담금 등 이 규정에 의한 비용 납부에 대한 소유자의 연대보증이 있거나, 제50조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사용자 단독명의

3. 열사용 신청자 중에서 열사용신청서의 구비서류중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열사용신청자는 사업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정하는 기일내에 사용자가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한 날을 열사용

신청일로 봅니다.

제7조 (공급승낙)

1. 사업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열의 공급을 승낙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사용신청의 일부 또는 전부를 거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열사용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1)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제한될 때
 - (2) 열공급시설 및 열사용시설의 상황에 따라 열공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3) 열사용신청 내용이 전체 사용자에게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 다만, 사업자와 해당 사용자의 협의에 의하여 그 불이익을 열사용 신청자가 해소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 (4) 이 규정 이외의 조건으로 공급요청이 있을 때

제8조 (열수급계약의 체결단위)

1. 사업자는 1사용신청에 대하여 1수급계약으로 열을 공급하며, 1사용장소에 계약종별이 서로 다를 경우 사용자는 계약종별로 사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1수급계약에 대해서 1인입 계량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용장소의 형태 또는 사업자의 공급시설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제9조 (계약종별)

1. 계약종별은 별표1과 같이 분류하며, 주된 열사용 용도에 따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열수급계약 체결이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어 계약종별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된 경우, 사업자는 계약종별의 적용을 열수급계약 체결당시부터 소급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열수급계약의 성립, 변경, 계약기간)

1. 열수급계약은 제7조 제2항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사용신청자에 대하여 사업자가 공급을 승낙하고 별지 제5-1, 5-2호 서식의 열수급계약서에 제6조 제2항 각 호의 명의로 상호 날인함으로써 성립됩니다. 다만, 사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계약서 날인이 지연될 경우에는 집단에너지 공급대상 지정공고지역 내의 사용자에 대해서는 최초 공사비부담금 납기일을 계약성립일로 간주하며, 지정공고지역 외 사용자에 대해서는 열수급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2. 사업자는 열사용신청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열수급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보증금의 납부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 (2) 공사비부담금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납부
- (3) 열요금, 기타 체납금이 있을 경우에는 그 납부
- (4) 열사용시설의 점검결과 열사용시설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보완
-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와 열수급계약이 체결되면, 공동주택 및 건물의 개별 소유자, 사용자 및 이에 준하는 자는 열수급계약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 4. 열수급계약 기간은 계약 또는 그 변경이 성립된 날로부터 1년으로 합니다.
- 5. 열수급계약 기간중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사업자의 합의에 의하여 열수급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 6. 열수급계약 기간 만료전에 열수급계약의 해지 또는 변경이 없거나 계약 내용에 대하여 양당사자간에 기간만료 7일전까지 다른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은 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 7. 기존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열수급계약 체결시 열수급계약에 대한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를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사업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수급예정일 등에 대하여 별지 제5-1호, 제5-2호 서식에 별도로 특약사항을 작성, 첨부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명의의 변경)

1. 매매, 임대, 기타의 원인에 의하여 사용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신 사용자는 별지 제3-1, 3-2호 서식에 의하여 명의를 변경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장 및 관리사무소장의 변동과 법인대표자의 변동은 사용자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명의변경 없이 계속해서 열의 공급을 받는 경우에는 전사용자의 모든 권리 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봅니다.
3. 제1항의 경우 열사용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는 신 사용자에게 승계됩니다.

제12조 (사용자 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1. 사용자가 열사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지희망일 7일 이전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해지 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지신청을 미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되는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됩니다.
3.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해지 희망일에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급을 끝내기 위한 조치를 완료한 날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됩니다.

제13조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열수급계약의 해지)

1. 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이 정지된 사용자가 정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하지 아니할 때에는 정지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 열수급계약을 해지합니다.
2.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아니한 사용자로서 열공급대상 목적물이 없어져 열

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이 즉시 해지됩니다.

3. 사용자가 열수급계약 조건등을 위반하여 사업자의 열배관공사를 지연 또는 중지시키는 등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예정일에 열공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채권, 채무 등)

1. 사용자와 관련된 열요금 기타의 채권, 채무는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 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는 열수급계약 해지 이후에도 기 설치된 사업자 소유의 공급시설을 사용장소 내에 계속 존치할 수 있습니다.
3. 열공급개시전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열사용을 위하여 사업자가 실시한 분배관공사 등의 실공사를 사용자가 기납부한 공사비부담금에서 정산합니다.
4. 열공급 개시후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사용자는 열수급계약 해지일 전에 미납된 공사비 부담금(잔금 할부금)을 완납하여야 합니다.

제14조의2 (열수급계약 해지후의 재사용)

1.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사용자가 동일 사용장소에서 재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실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공급 개시 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합니다.
2. 재사용하는 사용자가 당초 계약시보다 열사용시설을 증설사용할 경우에는 증설분에 대하여 제31조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새로운 열수급계약의 체결을 희망할 경우에는 신규사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3 장 공 급

제 3 장 공 급

제15조 (공급기간 및 시간)

사업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열수급계약 기간동안 기간 및 시간의 제한없이 계속하여 열을 공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열공급 시간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 (1) 열사용 비수기에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열배관 공사 또는 열원시설 보수공사 시
- (3)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 (공급조건)

사업자의 사용자에 대한 공급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열매체 온도는 사업자가 사용자 설비의 접속점 또는 가장 인접한 공급관의 계측 가능 지점에서 30분간 측정한 평균치로서 다음과 같습니다.

구 分		온 도	
난방용	공급온도	75°C ~ 115°C	
	회수온도	35°C ~ 55°C	
냉방용	공급온도	95°C ± 3°C	
	회수온도	1단흡수식냉동기 2단흡수식냉동기	최고 80°C 최고 55°C

2. 압력은 사용자 기계실내에 열교환설비에서 30분간 10분 간격으로 측정한 평균치로써 다음과 같습니다.

구 分		압 力
온수	공 급 관	최대 16kg / cm ²
	회 수 관	최대 16kg / cm ²

3. 외기온도에 따라 저부하로 공급되는 시간대에는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제2호의 온도 및 압력 이외로 공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공급개시)

1. 사업자는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사용자에 대하여 열사용시설의 점검, 기타 소정의 절차를 완료한 후 사용자와 협의 결정한 열수급개시 예정일에 열을 공급합니다. 다만, 열수급개시예정일이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포함)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열수급개시 예정일로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2. 사업자의 책임이 아닌 사고발생 또는 도로법, 하천법 등에 의하여 굴착 인.허가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수급계약서상의 열수급개시 예정일에 열을 공급하지 못하게 될 것이 분명할 경우에는 열수급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그 사유를 사전에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용자와 협의하여 열수급개시 예정일을 변경합니다.
3. 삭제
4.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내에서 사용자가 공동주택 또는 건물 착공일로부터 50일이 경과하여 열사용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의 준공 또는 입주 예정일에서 착공일로부터 50일 이후 경과한 날수만큼 연기하여 열수급개시 예정일을 정합니다. 다만, 해당 사용자가 제33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공사비부담금 납부 방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과 제34조 제2항에서 정한 연체료 상당액을 납부하고 사용자가 요청한 시기에 열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열수급개시 예정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위약처리)

1. 사용자가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에 의한 열수급계약을 위반하여 열을 사용함으로써 열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하게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위약금을 받습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한 기간이 확인되지 아니할 때에는 6월 이내에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2. 제1항의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1) 열공급시설 또는 열사용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으로 열을 부정 사용하였을 때 :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부정 사용분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 (2)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열사용시설을 신설 사용하였을 때 : 무단으로 신설한 시설을 사용한 것으로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
 - (3) 이 규정에 의한 열사용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열사용시설을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하였을 때 : 무단으로 변경 또는 증설 사용한 시설을 기준으로 산정한 열요금 산정액과 기 계약에 의하여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 (4) 계약된 종별 이외의 용도로 열을 사용하였을 때 : 실제 해당되는 계약종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열요금 상당액과 기계약된 계약종별에 의하여 산정한 열요금과의 차액
3. 사용자 또는 열사용신청자가 봉인을 파손하거나 파손 후 부정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합니다.

- (1) 봉인파손 : 100,000원
 (2) 부정사용 :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한 위약금
4.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사업자의 시설(열량계, 원격검침설비 등)이 고장 또는 파손되어 이를 수리 또는 신규설비로 개체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실소요공사비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제19조 (재산한계점)

1. 사업자와 사용자의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측 최초 차단밸브의 사용자측 단말로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는 사용자의 열교환설비로부터 가장 근접한 지하구조물의 외벽 2미터 밖에 설치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차단밸브의 설치위치와 열수송관의 매설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산한계점은 사업자의 시공 한계점으로 합니다.
 - (1) 사용자기계실의 주변여건에 따라 외벽의 2미터 밖에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 (2) 지하의 장애물로 인하여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3) 열공급시설, 열사용시설의 공사시기의 차이에 따라 변경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 (4) 기타 변경하는 것이 유지관리에 보다 효율적인 경우
3. 재산한계점까지의 열공급시설은 사업자 소유로 하고, 재산한계점 이후의 열사용시설은 사용자 소유로 하여 각각 시공, 유지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열사용시설내에 사업자가 설치하는 열계량장치(유량부, 적산부 및 온도감지기 등),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신호전송장치 및 원격검침설비와 그 부속기기는 사업자 소유로 합니다.
4.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와 협의하여 지하구조물벽 내측 1미터까지 열수송관의 시공을 대행할 수 있으며 재산한계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0조 (공급의 정지)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3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상의 위험 때문에 긴급을 요할 경우
 - (2) 사용자가 사용장소내에 열공급시설을 고의로 손상하거나, 망설하여 사업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주었을 경우
 - (3) 열사용시설 또는 열공급시설의 개조, 변조, 훼손, 조작 등에 의하여 열을 부정하게 사용하였을 경우
 - (4) 사용자가 열요금을 연체납기일로부터 14일되는 날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고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 (5)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완요구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선등을 요구하였을 때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기피 또는 거부 하여 안전상의 문제발생이

예상될 경우

2.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 (1)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안전상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
 -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업자의 열공급을 저해하거나,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 (3) 계약된 사용장소 또는 계약종별을 위배하여 열을 사용하였을 경우
 - (4)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장소의 출입 및 필요한 장소의 사용을 정당한 사유없이 거절하였을 경우
 - (5) 열사용시설이 제28조의 규정을 위배하여 열손실 등 비정상적인 운영이 될 우려가 있을 때
3. 사용장소에서 계약종별이 서로 다른 사용이 같이 있을 경우 그 중 일부사용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해당 사용단위별로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공급정지의 해제)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당한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이 해지되기 이전에 그 사유를 해소하고 사업자에 대한 열요금, 위약금, 손해배상금, 보증금, 기타의 납부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사업자는 지체없이 열의 공급을 재개하여야 합니다.

제22조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열의 공급을 중지하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1) 법령 및 본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 중지 또는 열의 사용이 제한될 때
 - (2)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열의 수급상황에 심한 불균형 또는 변동이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3)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에 고장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 (4) 열공급 시설의 수선, 변경, 기타 공사 등으로 열공급이 불가능할 때
 - (5) 비상재해 기타 불가항력에 의할 때
 - (6) 기타 안전상 부득이할 때
2. 제1항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서면, 공고 기타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긴급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3. 삭제

제23조 (손해배상의 면책)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가 받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1)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을 해지하였을 때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하였을 때
- (3)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의 공급을 중지하였거나, 열의 사용을 제한하였을 때

- (4) 사업자의 책임있는 사유가 아닌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 (5) 도로법, 하천법 등 관련법률에 의하여 열배관 관로굴착 인·허가 지연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수급개시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 (6) 도로, 교량 등의 건설공사로 인하여 열공급시설을 이설하거나 타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열공급시설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
- (7) 사용자 또는 사업자가 아닌 제3자가 열원시설 공사나 열배관공사 등을 방해하여 공사를 지연시키거나 중지시키는 등의 사유로 열수급개시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 (8) 제10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약사항의 이행을 위하여 열수급개시 예정일이 변경되었을 때

제24조 (사용장소의 출입 등)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의 토지 또는 건물내에 출입할 수 있으며, 열공급을 위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1) 열공급시설의 시공, 개수 또는 순시 및 점검을 할 때
- (2) 이 규정에 위배되는 열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사용시설을 점검할 때
- (3) 계량기의 검침 또는 검사를 할 때
- (4) 제12조, 제13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를 할 때

제 4 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 4 장 시공 및 유지관리

제25조 (공사의 시공)

1. 사업자의 열공급시설에 대한 공사는 사업자가 시공합니다.
2. 사용자의 열사용시설에 대한 공사는 사용자가 시공합니다.
3. 열공급시설과 열사용시설의 접속은 사업자의 입회하에 사용자가 시공합니다.
4.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을 설계, 시공할 때 관계법령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 선정, 시행하여 사후 유지, 보수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6조 (계량기의 설치 및 검사)

1. 열요금 계산에 필요한 계량기와 그 부속장치는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자가 시설하고 소유합니다.
2.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하여 계량기의 오차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정부공인기관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검사결과 계량기의 오차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 범위내일 경우에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3. 사용자의 요청에 의한 시험 및 점검을 행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그 대리인이 입회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사업자는 계량기 시험 및 점검결과 계량기가 계량 및 측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용공차를 초과할 때에는 지체없이 수리하여야 합니다.
5. 계량기의 부설위치는 계량이 적정하게 되고 또한, 검침 및 검사와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소로서 사업자가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합니다.
6.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거래용 계량기와는 별도로 사용자 열교환설비 이후에 사용자 부담으로 사용자용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7. 계량기와 원격검침설비 등에 필요한 전원은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제27조 (열사용시설의 공사)

1. 사용자 열사용시설의 설계, 시공 및 관련업무절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수준과 사업자가 정한 열사용시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의 공사중 또는 공사완료 후 열사용시설 전반에 대한 확인, 점검을 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는 제2항의 확인, 점검결과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 및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당해 시설의 수선, 보완,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사용자는 완공될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사업자의 준공점검을 받아야 하며, 사업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한 열사용시설의 사용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점검필증을 교부합니다.

제28조 (열사용시설의 운영)

사용자는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열사용시설의 난방 및 급탕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1) 난방 : 외기온도를 보상한 연속난방 운전
- (2) 급탕 : 공급온도 하절기50°C, 동절기55°C 이하 운전

제29조 (기계실 인입매설 배관의 공사 대행)

제19조 제4항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 기계실의 신규 인입매설 배관의 시공을 대행하는 경우와 사용자 기계실의 기존 인입 매설 배관의 누수 및 파열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열사용에 지장을 초래하는 긴급사태 발생시 사업자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복구공사를 대행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계약조건, 사용자의 제반비용의 납부방법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 5 장 공사비 부담금

제5장 공사비 부담금

제30조 (공사비 등의 부담 원칙)

1. 열공급시설의 공사비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와 사용자가 부담하고, 열사용시설의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하는 열공급 시설의공사비(공급시설과 열사용시설의 접속에 소요되는 공사비 포함)는 제31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합니다.
2. 재건축 및 재개발사업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 의 공사를 할 때 또는 특수한 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 이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3. 제20조에 의한 공급정지 후 다시 열공급을 받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 합니다. 다만, 재건축 또는 재개발사업 등으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30조의2 (재건축시의 공사비부담금)

1. 열수급계약 체결 후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을 제33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사업자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공사비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단,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면적 또는 열부하의 증가가 없는 경우에는 당초 계약당시의 단가를 적용합니다.
 - (1) 주택용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며, 기계약체결된 계약면적은 열요금 기본요금 계약면적을 말합니다.

$$(재건축후 계약면적 \times 재계약체결시의 신축해당단가) - (기계약체결된 계약면적 \times 재계약 체결당시 기존해당단가)$$
 - (2) 업무용 및 공공용은 다음 산식으로 산정하며, 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기계약체결된 연결열부하는 기계약체결 당시의 연결열부하를 말합니다.

$$(재건축후 연결열부하 \times 재계약체결시의 신축해당단가) - (기계약체결된 연결열부하 \times 재계약 체결당시 기존해당단가)$$

제30조의3(공사비부담금의 사용원칙)

사용자가 부담한 공사비부담금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 (1) 열원시설 : 물 · 증기 기타 열매체를 가열하거나 냉각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 가. 열발생설비(보일러, 터빈 · 발전기, 소각로 등)
 - 나. 열펌프

다. 냉동설비

라. 열교환기(열수송시설은 제외한다)

마. 축열조

바. 기타 열의 생산과 관련이 있는 설비

(2) 열수송시설 : 물·증기 기타 열매체를 수송 또는 분배하는 기기 및 그 부속기기로서 다음 각목의 시설

가. 열수송관(열원시설 및 법 제2조제7호의 사용시설안의 배관을 제외한다)

나. 순환펌프

다. 열교환기(열원시설 간 열 교환을 위하여 열수송관 중간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그 내부배관

라. 기타 열의 수송 또는 분배와 관련이 있는 설비

제30조의4(공사비부담금의 회계분리 및 공개)

1. 사업자는 법 제20조의2 제3항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야 합니다.

(1) 법 제18조 제1항에 따른 건설비용의 부담금과 타 법률에 의한 부담금

(2) 법 제2조의 열공급시설과 다른 유무형자산의 취득원가, 감가상각누계액 및 감가상각비

2. 공사비부담금과 관련하여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재무제표 주석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합니다.

(1) 당기 수령액 및 회계기간 말 미사용 잔액

(2) 법 제2조의 열공급시설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3) 이연수익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연수익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액

(4) 자산차감법에 따라 회계처리하는 경우 열공급시설에서 차감 표시하는 공사비부담금의 기초 장부금액, 기말 장부금액 및 회계기간 중 변동내역

제31조 (공사비 부담금)

1. 열사용신청자는 제30조 제1항에 규정한 공사비부담금으로 별표2에 정한 금액을 제33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증설사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이외에서 사업자의 시설 공사비가 공사비 부담금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은 사용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가 사업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공사비의 초과금액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3. 별표2에 정한 각 계약종별 공사비부담금은 다음 산식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R = F \times (1 + i)$$

R : 조정 공사비부담금 단가

F : 현행 공사비부담금 단가

i : <주택용(신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조정기간 동안의 기본형 건축비 조정율

<주택용(기존) 및 업무용, 공공용>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조정기간 동안의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

4. 제3항의 산식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의 조정시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며, 단가 적용은 다음 각 호의 1을 적용합니다.
 - (1) 제33조 제1항 1호의 납부방법을 따르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2) 제33조 제1항 2호 및 제2항의 납부방법을 따르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3) 제33조 제3항의 납부방법을 따르는 사용자의 경우(기존학교 포함)에는 열사용신청 접수일, 열 공급승낙일 등을 감안하여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 (4) 신축학교 또는 제1호 내지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착공일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5. 지역난방과 지역냉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부담금을 지역냉방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제32조 (공사비부담금의 청구 및 납부)

1. 사용자는 사업자가 지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지정한 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 청구서(이하 "청구서" 라 합니다)를 납기일 10일전 까지 송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공사비부담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후 열공급개시전에 사용자가 열수급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가 기 납부한 공사비부담금을 환불하지 않으며, 계약해지에 따라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공사비부담금의 납부방법)

1. 집단에너지공급 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 신축하는 공동주택의 공사비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의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입주자 모집공고에 의하여 분양하는 민영공동주택 또는 착공 후 30일 이내에 분양공고를 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가 건립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체의 분양 및 대금징수비율에 관계없이 총 공사비부담금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2항에 의거 승인받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기일로부터은행 영업일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2) 제1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신축 공동주택, 임대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총 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60%(15%씩 4회)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각각 분할납부하며 계약금은 당해 공동주택의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중도금은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수급개시일간의 기간을 5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한 날 이내에, 잔금은 열

공급개시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10%이내에서 사업자가 따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2.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지역내에서 신축하는 건물(학교,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의 20%를 계약금으로, 60%(15%씩4회)를 중도금으로, 20%를 잔금으로 각각 분할납부하며, 계약금은 당해 건물의 착공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중도금은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수급개시예정일 간의 기간을 5등분 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에, 잔금은 열공급개시일 이내에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제1항 내지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중앙난방방식(개별난방방식 포함)의 공동주택과 건물, 그리고 학교와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건물의 경우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공사비 부담금을 일시 또는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공급개시일 이후에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연 10% 이내에서 사업자가 따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4.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 공고된 지역이외의 경우에는 신축 사용자의 공사비 부담금 납부방법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다만, 사용자와 협의하여 공사비부담금 납부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열수급계약 체결이후 사용자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중지 등의 사유발생시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 납부기일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제34조 (연체료)

1.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일 다음날로부터 일수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체료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의3(가산금 등) 제2항 제2호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으로부터 변제를 금지하는 보전처분(이에 준하는 결정, 명령, 판결을 포함합니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전처분일로부터 연체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제35조 (납부순위)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 중 일부를 납부한 때에는 먼저 발생한 납부 회차별로 다음의 납부순위에 따라 차례로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 (1) 연체료 (2) 공사비부담금 (이자 포함)

제36조 (공사비부담금의 정정)

1. 공사비부담금의 청구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다음 절차에 따릅니다.
 - (1) 이의제기는 납기일 7일전까지 사업자에게 문서로써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를 검토한 결과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을 정정하여 별도청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청구서의 발급은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날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이의 제기한 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정산합니다. 다만,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한 날 60일 후에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여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다음 회차의 공사비 부담금 부과시 또는 사용자와 별도 협의한 날 이내에 정산합니다.
 - (4) 제3호에 의거, 공사비부담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당초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2. 사업자는 공사비부담금의 청구 또는 수납후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이 잘못되었음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환급 또는 추가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추가청구에 대하여는 제32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37조 (계산결과의 끝수 처리)

1. 공사비부담금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건축연면적은 m^2 를 단위로 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3. 연결열부하는 Mcal/h 를 단위로 하여 산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제38조 (정산)

공사비부담금의 계산시 임시적용한 건축연면적 또는 연결열부하가 추후 확정된 경우에는 공사비부담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에 따른 이자와 연체료의 소급적용은 없습니다.

제39조 (시설관리비등의 부담)

1. 열공급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고, 사용자시설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2.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열공급시설을 멸실, 파손 또는 훼손케 하였을 경우에는 사업자는 사용자로부터 원상복구에 소요된 비용 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요 금

제40조 (요금의 적용 개시시기)

1. 열요금은 열의 수급계약에 의거, 열의 수급이 개시된 날로부터 적용합니다.
2. 사용자가 열수급개시 예정일을 연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열수급개시 예정일 3일전까지 서면으로 연기 신청하여야 합니다.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용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열수급계약에 의한 열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열수급이 개시되지 아니한 기간동안 기본요금의 30%를 열요금으로 적용합니다.
4. 제2항에 의한 연기기간은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총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사업자의 인정 없이 3개월 초과시는 상기 3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5. 제4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의 연기신청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열요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1)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열수급개시 예정일을 연기 신청한 경우, 열수급 개시 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까지 열요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열수급개시 예정일을 연기 신청하지 못한 경우 당초 열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연기신청일 까지는 기본요금의 30%를 열요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41조 (요금의 계산)

1.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2. 기본요금은 열사용에 관계없이 매월 계산합니다. 이 경우 1사용장소에 계약종별이 서로 다른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각 계약종별로 산정합니다.
3. 사용요금은 계량기 또는 원격검침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열량에 따라 매월 요금표에 의하여 계산합니다.
4. 제8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계약종별로 수급계약을 따로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 종별 중 고율의 요금을 적용합니다.
5. 1사용장소에 계약종별이 서로 다른 사용이 있을 경우에는 각 사용별 계량기 또는 원격검침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열량에 따라 요금을 산정,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각 산정된 요금을 합산하여 일괄 부과할 수 있습니다.
6. 제12조,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열수급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지된 경우 해당 사용자가 열수급계약 폐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 사용장소에서 열공급을 다시 받고자 할 때에는 열수급계약 폐지기간에 해당하는 기본요금을 열수급계약 체결시 납부하여 합니다.

7. 아파트형 공장에 대하여는 기본요금과 사용요금 모두 업무용을 적용합니다.

제42조 (요금의 감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 열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삭제
2. 냉방시설에 사용하는 열에 대하여는 기본요금을 제외한 사용요금만 부과 하며, 난방비 수기에 한하여 100분에 30범위내에서 사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 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부속병원 제외) 및 영유아교육법 제6조에 의한 국공립 보육시설에 대하여는 열요금 중 기본요금에 한하여 100분의 30 범위내에서 감면할 수 있습니다.
4. 삭제
5. 삭제

제43조 (요금조정의 원칙)

1. 사업자는 도시가스요금 변동에 따른 제43조의2(요금조정) 및 연료비와 요금 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한 제44조(요금정산)에 따라 산정된 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요금조정 시 계약종별 및 기본요금과 사용요금간의 배분, 온수 냉방용 요금은 요금구조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가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조정률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제43조의2 (요금조정)

1. 사업자는 제2항에 의한 요금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1 + 요금조정률)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조정률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 요금조정률 =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민감도
 - (2) 도시가스요금 조정률 : 천연가스공급규정 <별표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하여 정부가 승인한 도시가스의 평균 요금조정률
 - (3) 민감도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중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가 차지하는 비율
3.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법 제2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열생산자에게 지불한 비용의 합계액 +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합계액
4.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천연가스와 직접 관련된 연료비”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산정합니다.
 - (1) 천연가스를 주 연료로 사용하는 사업자 자체 열생산시설의 연료비
 - (2)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량 중 천연가스 요금에 연동하여 지불하는 수열비
 - (3) 사업자가 외부에서 구입하는 열을 생산하는 시설의 주연료가 천연가스인 경우의 수열비

5.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감도는 제45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민감도를 적용합니다.
6.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는 제2항 제2호의 조정률을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와 동일하게 시행합니다.

제44조 (요금정산)

1. 사업자는 제43조의2(요금조정)의 규정을 적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간 연료비와 회수된 요금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연1회 요금정산을 실시합니다.
2. 사업자는 제5항에 의한 정산조정률을 적용하여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의 단가를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text{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 \text{요금조정기준일 직전의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 \times (1 + \text{정산조정률})$$
3. 제5항의 정산조정률을 산정하기 위한 전년도 정산금액은 직전년도 결산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1) 정산금액(원)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2)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3조의2(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 (3) 연간 총 열매출액 중 연료비 해당분 =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 - (요금상 한적용 원단위 × 연간 열판매량)
 - (4) 연간 기본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본요금 합계액. 다만, 냉수 계약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5) 연간 사용요금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요금 합계액
 - (6) 제4호 또는 제5호를 계산함에 있어서 요금의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감면 후의 요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 (7) 요금상한적용원단위 : 제6항 제2호에서 규정한 원단위
 - (8) 연간 열판매량 : 제5호를 계산하는데 적용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4. 제3항 제3호의 “연간 기본요금 및 사용요금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는 이전 정산금액 회수분을 제외합니다.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정산금액은 다음과 같이 정산조정률로 환산하여 적용합니다.
 - (1) 연간 정산원단위(원/Gcal)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 ÷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 (2) 정산조정률(%)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연간 정산원단위) ÷ 직전년도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 × 100 - 100
 - (3) 당해연도 예산서 기준 연간 예상 열판매량: 제2호의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사업연도 예산서에 의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열판매량
6.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 총괄원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text{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원/Gcal)} = \text{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text{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1) 연평균 연료비원단위(원/Gcal) :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연간 열판매량
 - (2) 요금상한적용원단위(원/Gcal) :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지역난방 열요금산정기준 및 상한지정(이하 “요금상한고시”라 합니다)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별로 산정된 상한원단위의 범위 이내에서 사업자가 적용한 원단위
 - (3) 연간 열생산 총연료비 : 제43조의2(요금조정) 제3항과 같이 계산합니다.
 - (4) 연간 열판매량 : 제3항 제8호의 열판매량
7. 정산조정률은 제45조(시장기준요금)를 산정하는 사업자의 정산조정률을 당해연도 7월1일부터 익년도 6월30일까지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요금변동의 안정성 등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 요금조정 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8. 정산조정률은 ± 1%이상일 때만 적용하며, 정산조정률을 적용하는 요금조정기준일에 미반영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차기 요금조정 또는 정산조정시 반영하여 조정합니다.

제45조 (시장기준요금)

1. 시장기준요금은 지역난방을 공급받는 세대 중 대다수의 세대에 적용되는 요금으로, 사업자는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2. 제43조의2(요금정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연평균 단위당총괄원가가 시장기준요금을 산정하는 사업자와 다른 사업자는 시장기준요금에 해당하는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의 110% 범위 내에서 요금표(별표3)중 난방용 사용요금 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는 제1항의 시장기준요금 준용을 위해 요금조정률 및 요금조정시기 등을 변경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제46조 (요금조정절차)

사업자는 제43조의2(요금조정) 및 제44조(요금정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단, 제43조의2(요금조정)에 대해서는 제1호의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 (1) 요금조정내역에 대한 검증기관의 사후검증
-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열공급규정 개정신고
- (3) 사용자에 대한 열요금 조정 사전통보

제46조의2 (요금검증)

1. 사업자는 열요금 조정에 관하여 관련법령 및 공급규정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산정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열요금 검증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검증받아야 합니다.
2. 사업자는 검증기관이 요금조정에 대한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는 제1항의 검증기관 외에 사업자 공급구역 내의 소비자 대표를 포함하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4. 제45조(시장기준요금)을 준용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제47조 (검침일)

검침은 각 사용자별로(이하 "정기검침일" 이라 합니다) 매월 말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비상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정기검침일 이외의 날에 검침 할 수 있습니다.

제48조 (검침방법)

1. 사업자는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하거나, 원격검침을 합니다.
2. 검침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합니다.

제49조 (계산기간)

요금은 전월의 정기검침일 이후로부터 당월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이하 "검침기간" 이라 합니다)마다 계산하여 일할계산의 경우를 제외하고 검침기간은 1개월로 간주하여 계산합니다. 다만, 열의 공급을 개시하였을 경우에는 개시일로부터 최초 정기검침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직전 정기검침일 이후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열요금을 계산합니다.

제50조 (사용열량의 산정)

1. 사용열량의 산정은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량기에 의하여 산출된 사용열량으로 합니다. 다만, 1수급계약에 여러 개의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 각 계량기의 사용열량 합산을 사용량으로 합니다.
2. 매월의 사용열량은 당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에서 전월 정기검침일의 검침량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제51조 (열사용량의 조정)

1. 계량기의 고장 등으로 열사용량을 정확히 계량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장 등의 기간중의 열사용량 산정은 다음 각 호에 정한 방법 중 가장 적합한 한가지 방법을 사용자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각 기간중의 외기온도를 감안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사업자는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습니다.

(1) 전년 동월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

$$\text{사용량} = \frac{\text{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량}}{\text{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일수}} \times \text{대상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하는 방법

$$\text{사용량} = \frac{\text{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량}}{\text{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 \times \text{대상일수}$$

다만, 그 검침기간중에 교환 또는 수리 전후의 계량기의 실적이 10일간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3) 사용설비 및 사용기간에 의하는 방법 :

$$\text{사용량} = \text{사용설비용량 (Kcal/h)} \times 1\text{일 사용시간} \times \text{대상일수}$$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 계산에 의한 방법 :

$$\text{사용량} = \text{난방면적 (m}^2\text{)} \times \text{단위 난방면적당 연간 열소비량 (Gcal/m}^2\text{)}$$

$$\times \frac{\text{해당월의 소비비율} \times \text{대상일수}}{\text{월력에 의한 해당월의 일수}}$$

(5) 제26조의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수정에 의한 방법 :

$$\text{사용량} = \frac{\text{계량된 사용량}}{100\% + (\text{오차율})} \times 100\%$$

이 경우 조정기간은 사용공차를 초과하는 오차의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한 월까지 소급하며, 그 발생시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고일 또는 사업자의 조사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 합니다.

(6) 봉인기간중 적산된 열량의 조정 : 사용자기계실의 봉인기간중 적산된 열량은 봉인이 파손되지 않았고 열사용 사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인정하는 경우 적산된 열량을 조정 합니다.

(7) 사용유량에 의한 방법 :

$$\text{사용량} = \text{열량환산계수 (Kwh/m}^3 \cdot {^\circ}\text{C)} \times \text{사용유량 (m}^3\text{)} \times \text{공급.회수온도차} ({^\circ}\text{C})$$

(1Kwh = 0.86Mcal)

2. 제26조 제4항의 교체, 수리가 사용자의 거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자가 임의로 열요금을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금액은 해당 월평균치 또는 단위면적당 열사용량의 3배 이내에서 조정합니다.
3. 사업자가 정기검침이나 기타의 상황에서 계량기의 이상을 인지하고 점검을 위하여 사용자를 방문하였거나 부재중일 경우 1, 2차 통보 후 연락이 없을 시는 사업자가 제2호의 규정을 적용 요금을 임의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신호전송설비 등의 이상으로 원격검침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하거나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열사용량을 산정 합니다.
5. 원격검침으로 계량된 사용열량은 연 1회이상 계량기에 의하여 검침을 한 후 정산합니다.
6.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산정된 조정 또는 정산열량이 과다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업자와 협의하여 3월 이내에서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7.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열사용량 조정을 거부할 경우, 사업자는 제1항의 각 호의 방법중 한가지 방법을 택하여 조정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제52조 (요금의 납부의무 및 청구)

1. 사용자의 요금납부 의무는 검침일에 발생합니다.
2. 요금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의무 발생일의 익일로부터 기산하여 1개월 범위내에서

- 사업자가 지정한 날(이하 "납기일" 이라 합니다) 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제2항 규정에 의한 납기일(납기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까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고지한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연체료" 라 합니다)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제3항의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납기일로부터 1월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매 1월마다 제3항의 고지한 요금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매월의 연체료는 제34조 규정에 의한 공급정지일이 속하는 월까지 적용합니다.
 5. 사용자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자는 제20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공급 정지일로부터 7일째 되는 날에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및 기타의 사유로 발생한 사업자의 채권 확보를 위하여 재산 압류 등의 법적 강제절차를 개시하며, 사용자는 이에 이의를 제기치 않습니다.
 6. 사업자는 요금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합니다)를 납기일 20일전까지 발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사용자와 협의하여 달리 발급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청구서를 납기일 이후에 받았음을 사업자가 인정할 경우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째 되는 날을 납기일로 합니다.
 7. 제3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자는 납기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독촉장을 해당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납기일까지 사업자가 지정한 수납기관에 청구된 요금("연체료" 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9. 사용자가 열요금(연체료를 포함합니다) 중 일부를 납부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납부 한 것으로 합니다.
 - (1) 열요금에 대한 연체료
 - (2) 열요금

제53조 (요금의 계산착오 등에 대한 시정)

1. 요금의 청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용자는 납기일 7일전까지 이의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2. 제1항 규정의 기간내에 이의제기 등으로 요금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당월분 요금에서 정정하여 별도청구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도 청구서 발급은 제52조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간 이후 사용자가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요금 적용이 잘못되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익월분 요금에서 정산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요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도 요금의 납기일은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제2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54조 (기본요금의 정산)

기본요금 계산시 임시적용한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추후 확정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정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정산에 따른 이자 적용은 없습니다.

제55조 (보증금)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용자에 대하여는 열공급의 개시나 재공급의 조건으로써 예상 월액요금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증금 또는 사업자가 인정하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지급보증서 등(이하 “보증증서”라 합니다)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 (1) 소유자와 사용자가 서로 다른 경우 사용자 명의로 열사용신청을 하는 사용자
 -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열공급의 정지를 당한 사실이 있는 사용자
 - (3) 열요금을 1년이내에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연체하여 납부하는 사용자
 - (4) 열공급의 개시 전후 또는 재공급 개시 전후에 사용자가 변경되는 사용자
 - (5) 열요금 미납으로 제13조 제1항 제3항에 의하여 열수급계약 해지사실이 있는 사용자
 - (6) 업무용 건축물 또는 상가 등을 신축(증개축 포함) 또는 매입한 자 중 향후 동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분양하는 사용자
2.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증권의 예치기간은 1년으로 하며. 제1항에 의거 사업자가 예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1년마다 연장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예치된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열수급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 등에 충당하고 그 잔액을 반환합니다. 다만, 미수 열요금 등이 보증금을 초과할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초과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56조 (일할 계산)

1.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요금에 대하여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계산 합니다.
 - (1) 열의 수급개시 또는 수급계약이 해지된 경우
 - (2) 계약종별, 요금이 변경된 경우
 - (3) 실제 검침일이 정기검침일을 기준으로 5일 이상 초과한 경우
 - (4) 정기검침일이 변경되었을 경우
 - (5)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의 중지 또는 사용의 제한이 있을 경우. 이때에 중지 또는 제한이 연속하는 24시간을 1일로 하고, 1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 사업자가 일할계산을 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중간검침을 합니다.
3. 사용일수의 계산에 있어 열수급의 개시일 또는 변경일은 포함하고 중지일 또는 해지일은 제외합니다.
4. 기본요금의 일할계산의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text{월 기본요금} \times (\text{사용일수} \div \text{해당월의 일수})$$
5.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요금은 열수급개시예정일로 부터 열수급개시 전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매월 계산하며, 이 경우 열수급개시 예정일을 포함합니다.

제57조 (계산결과의 끝수처리)

1. 사업자는 요금의 계산결과 10원 미만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2. 사업자는 주택용 계약면적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업무용 및 공공용의 계약용량 산정시에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합니다. 이 경우 계약면적의 단위는 m^2 이며, 계약용량의 단위는 Mcal/h입니다.

제 7 장 사용자 의무

제 7 장 사용자 의무

제58조 (열사용시설기준 등)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열사용시설기준 등은 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1조(기술기준)에 의거 열사용시설기준을 별도로 정합니다.

제59조 (사용자의 의무)

1. 사용자는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열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을 유지관리함에 있어 열공급시설의 멸실, 파손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자는 열사용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사용자를 지도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도서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4. 삭제
5. 사용자는 사업자가 열공급을 하기 위한 열공급시설 공사, 사용자 상호간의 열공급관 연결공사 및 계량기의 원격검침설비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용자의 도로, 녹지 등 토지와 기계실,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을 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60조 (손해배상 의무)

1. 사용자가 제5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 의무를 해태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비용 등 사업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열수급계약이 해지되어 사업자에게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열수급계약 해지로 발생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 8 장 안전

제 8 장 안 전

제61조 (안전책임)

1. 열공급시설은 사업자가 안전의 책임을 지고 열사용시설은 사용자가 안전책임을 집니다.
2. 사업자와 사용자의 안전 및 유지보수 책임한계점은 원칙적으로 제19조에 의한 재산한계점과 일치합니다.

제62조 (통보 등)

1. 사업자는 열공급시설에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사태가 발생하여 열의 수급에 지장이 생겼을 때에는 조속히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는 열사용시설에 누수, 온도, 압력 등의 이상 사태가 발생하여 열공급 시설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될 때에는 조속히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가 열사용시설의 수선, 개조 등을 할 때에 열의 수급에 지장이 발생될 것이 예상될 때에는 미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63조 (열사용시설의 개선)

사업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열사용시설에 대하여 수선, 철거 또는 개조를 요구할 수 있고,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제 9 장 기 타

제 9장 기 타

제64조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한 책임)

사용자는 사용자의 열사용장소내에서 열을 사용하는 자 또는 그 관리인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자기의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본 규정에서 정한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제65조 (문서의 기록 및 보존)

1. 사용자는 열공급과 관련된 제반문서 중 사업자가 따로 정하는 문서에 대하여는 당해 연말을 기준으로 3년간 기록 보존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로 사용자 및 기타 관계기관 등의 열람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계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제66조 (규정의 공표 및 비치의무)

사업자는 본 규정을 신고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사업자의 해당부서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항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제67조 (위임)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은 사업자가 따로 정하여 시행합니다.

부 칙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제 2조 (열요금표 등)

제9조 규정에 의한 별표 1 (계약종별),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 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3 (열요금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시행합니다.

제 5 장
표

[별표 1]

계약종별분류표

구 분	적 용 대 상
주택용	* 공동주택
업무용	* 주택용 및 공공용 이외
공공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법 제 81조에 의한 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보건위생시설 * 사회복지사업법 제 34조 및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농촌진흥법 제 2조에 의한 농민교육기관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

주) 위에 분류에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계약종별을 결정함.

[별표 2]

공사비부담금 부과기준

(부가가치세별도)

계약종별		단위	단가		비고	
주택용	신축	계약면적 m ² 당	-	14,040원		
	기존		-	7,050원		
업무용	신축	연결열부하 Mcal/h당	0부터 300Mcal/h까지	167,630원		
			다음 1,000Mcal/h까지	131,360원		
			다음 3,500Mcal/h까지	126,180원		
			3,500Mcal/h초과	110,630원		
	기존		0부터 300Mcal/h까지	96,740원		
			다음 1,000Mcal/h까지	82,290원		
			다음 3,500Mcal/h까지	79,050원		
			3,500Mcal/h초과	69,300원		
공공용	공공시설	연결열부하 Mcal/h당	0부터 300Mcal/h까지	150,860원		
			다음 1,000Mcal/h까지	118,220원		
			다음 3,500Mcal/h까지	113,560원		
			3,500Mcal/h초과	99,570원		
	학교·사회 복지시설		0부터 300Mcal/h까지	87,060원		
			다음 1,000Mcal/h까지	74,050원		
			다음 3,500Mcal/h까지	71,140원		
			3,500Mcal/h초과	62,370원		

주1)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동면적 중 지역난방 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면적 합계로 함.(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주2) 추정연결열부하 : 건물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계부하가 제시되지 아니한 경우 다음 산식으로 산정한 추정치이며, 주차장에 혼재되어 있는 기타 용도의 면적 중 용도에 따른 면적구분이 되지 않는 부분은 열사용여부에 관계없이 주차장 면적에 포함함.

* 추정연결열부하 = (건축면적 - 지하주차장면적) × 추정단위연결열부하 × 0.8

* 추정단위연결열부하 : 별표5에서 정하며, 사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층별 또는 동별로 구분하여 단위연결열부하를 적용할 수 있음.

주3) 대학부속시설인 대학병원에 대한 공사비부담금은 공공용 연결열부하 (Mcal/h) 적용

[별표 3]

열 요 금 표

(부가가치세 별도)

구 분	기 본 요 금	사 용 요 금
주택용	계약면적 m^2 당 52.40원	Mcal 당 101.57원
업무용	열교환기용량 1Mcal/h당 396.79원	Mcal 당 131.87원
공공용	열교환기용량 1Mcal/h당 361.98원	Mcal 당 115.16원

주) 계약면적 산정은 건축물관리대장 등 공부상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
역난방열을 사용하는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실 등의 건축연면적 합계로 함
(다만, 계약면적에서 제외된 부분에 열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때부터 계약면적에 산입함)

[별표 4]

단위 연결열부하 기준표

(단위 : Kcal/m² . h)

용도구분		단위부하		주정단위 연결 열부하	비고
		난방연결	급탕연결		
공동주택	아파트	49.0	15.0	64.0	전용면적 60m ² 이상 기준
	연립주택	53.9	15.0	68.9	전용면적 60m ² 이상 기준
근린생활시설		86.0	5.0	91.0	관리사무소, 사회복지관, 아파트형공장 포함
근린공동시설		89.0	7.0	96.0	동사무소, 소방파출소, 파출소, 우체국
종교시설		115.0	2.0	117.0	
노유자시설		86.0	7.0	93.0	유치원, 노인정
의료시설		105.0	25.0	130.0	병원급 이하
교육연구시설		89.0	5.0	94.0	학교, 교육원, 직업훈련소
업무시설 (일반.공공)		86.0	7.0	93.0	
숙박시설		89.0	45.0	134.0	
판매시설		98.0	5.0	103.0	
위락시설 (특수목욕탕)		110.0	80.0	190.0	목욕장이외의 시설은 판매 시설기준 적용
관람집회시설		115.0	2.0	117.0	
전시시설		115.0	2.0	117.0	

※ 단위부하는 신축건물 난방면적 기준

※ 용도구분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 1에 의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열사용시설기준에 따름.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주택용)

열 사용 신 청 서					처리기간
					14일
※ 사용자 번호		※ 계약종별		※ 접수일	
① 공동주택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④ 공동주택소재지					
⑤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⑥ 관리사무소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 사용 시설	공동	⑦ 건축허가연면적 (㎡)		⑧ 동 수	
	주택	⑨ 세대 수(호)		⑩ 기계실수	
	부대	⑪ 시설명		⑫ 판매시설	⑬ 기타 ()
	복리	⑭ 건축허가연면적 (㎡)			
	시설	⑮ 열 사용 유무			
열공급개시 요청일	※ 열공급개시일				

본인은 귀사의 열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사가 공급하는 열 사용을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청 조 건

- (1) 본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 (3) 본인은 상기 열 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 (4) 본인은 열 사용 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인)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_____ (인)

무림파워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승인서 (신축),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입증서류 (기준)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건축주 등 소유자입증서류 (법인), 입주자대표회장 입증서류, 열 사용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및 열 사용 신청 주민결의서 (기준) 1부.
- (4) 열 사용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주)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1-2호 서식]
(업무용, 공공용)

열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접수일	
① 건물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건물소재지					
⑤ 사용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⑥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열사용시설	⑦ 건축허가면적(㎡)			⑧ 건물용도	
	⑨ 열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난방, <input type="checkbox"/> 급탕 <input type="checkbox"/> 냉방		⑩ 동수	
열공급개시요청일	※ 열공급개시일				

본인은 귀사의 열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사가 공급하는 열사용을 위하여 다음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 (1) 본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 (3) 본인은 상기 열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협조한다.
- (4) 본인은 열사용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인)

(사용자)

소유자 _____ (인)

무림파워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계획서),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입증서류 (기준)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3) 소유자 동의서 1부.
- (4) 사용자 및 소유자 입증서류 1부.
- (5)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주)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2-1호 서식]

(공동주택용)

열 사용 (□증설, □변경, □재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접수일
① 공동주택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공동주택소재지					
⑤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⑥ 관리사무소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⑦ 변경일			⑧ 변경사유		
⑨ 신청내용	⑩ 변경전			⑪ 변경후	
<input type="checkbox"/> 증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재사용					

본인은 귀사의 열공급규정 제 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사가 공급하는 열 사용을 위하여

다음 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 (1) 본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 (3) 본인은 상기 열 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 협조한다.
- (4) 본인은 열 사용 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인)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_____ (인)

무림파워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계획승인서,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입증서류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 (3) 입주자대표회의 입증서류, 열 사용 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및 주민결의서 (기준) 1부.
- (4) 열 사용 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주)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2-2호 서식]
(업무용, 공공용)

열사용 (□증설, □변경, □재사용)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접수일	
① 건물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건물소재지					
⑤ 사용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⑥ 소유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⑦ 변경일			⑧ 변경사유		
⑨ 신청내용	⑩ 변경전			⑪ 변경후	
<input type="checkbox"/> 증설					
<input type="checkbox"/> 변경					
<input type="checkbox"/> 재사용					

본인은 귀사의 열공급규정 제6조에 의거, 상기 장소에서 귀사가 공급하는 열사용을 위하여 다음조건으로 신청하오니 승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조건

- (1) 본인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귀사의 열공급규정을 승락한다.
- (2) 본인은 열을 사용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책임을 진다.
- (3) 본인은 상기 열사용 신청장소에 열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공사에 적극협조한다.
- (4) 본인은 열사용신청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성실히 납부하며, 공사비부담금 미납시에는 열공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납부하는 의무를 가진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인)

(사용자)

소유자 _____ (인)

무림파워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 (1)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계획서), 준공검사필증 등 공부입증서류 (기준) 사본 1부.
- (2) 사업자등록 사본 1부.
- (3) 소유자 동의서 1부.
- (4) 사용자 및 소유자 입증서류 1부.
- (5) 열사용시설기준에서 정하는 설계도서

주)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3-1호 서식]

(공동주택용)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접수일
① 공동주택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공동주택소재지					
⑤ 명의변경일				⑥ 명의변경사유	
신 사 용 자	⑤ 소유자/입주자 대표회장	주소 성명			
	⑥ 관리사무소장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9) 전 사 용 자	주소 입주자 대표회장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은 귀사의 열공급규정 제 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오며,

전 사용자의 귀사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_____ (인)

[신 사용자 (소유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장)]

관리사무소장 _____ (인)

무림파워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소유자 (신축)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 입증서류 1부

주)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3-2호 서식]
(업무용, 공공용)

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4일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접수일	
① 건물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④ 건물소재지					
⑤ 명의변경일			⑥ 명의변경사유		
⑨ 신 사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⑨ 전 사용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⑨ 소유자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법인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본인은 귀 사의 열공급규정 제11조에 의거, 위와 같이 사용자 명의변경을 신청
하오며, 전사용자의 귀사에 대한 모든 권리, 의무를 승계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신사용자) _____ (인)

소유자 _____ (인)

무림파워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구비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2) 매매 또는 임대차 사실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3) 소유자 동의서 1부.
- (4) 사용자 및 소유자 입증서류 1부

주)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4호 서식]

열수급계약 해지 신청서					처리기간 7일
※ 사용자번호		※ 계약종별		※ 접수일	
① 사용자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 전화번호	
④ 시설소재지					
(⑤ 사용자 관리사무 소장)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⑥ 소유자 (입주자 대표회장)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계약해지 신청	⑦ 내용			⑧ 해지요청일	
	⑨ 사유			※ 해지일	

본인은 귀사의 열공급규정 제12조에 의거, 위와같이 열수급계약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인)

[사용자 (관리사무소장)]

소유자 (인)

(입주자대표회장)

무림파워텍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주) ※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별지 제5-1호 서식
(공동주택용)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

제 호

지역난방열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	① 공동 주택 명	
	② 주 소	
	③ 성 명 (대표)	
지역난방열 사업자 (이하 "을"이라 함)	④ 주 소	
	⑤ 성 명 (상호)	무림파워텍(주)

위 갑·을 양자간에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⑥ 열사용 시설명		⑦ 계약종별		⑧ 기계실 수	
⑨ 열사용시설소재지					
⑩ 건축연면적 (m ²)		⑪ 열사용용도	난방, 급탕용		
		⑫ 계약면적 (m ²)	거래용 열량계가 설치되는 갑의 기계실내		
⑬ 열수급 예정일	년 월 일	⑯ 재산한계점	갑의 부지내 을이 설치한 열수송관의 갑측단말 (다만, 거래용열량계,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및 신호전송장치 등은 을의 소유임)		
⑭ 계약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검침일	매 월 일	⑯ 재산한계점과 동일			
열요금납기일	검침익월 일	⑯ 열요금의 적용	열공급규정 제41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 타 사 항	(1) 계약기간내에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갑은 을이 열공급을 하기 위한 열공급시설공사와 사용자 상호간의 열공급관 연결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갑의 도로, 녹지등 토지와 기계실,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을 을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갑은 을이 부과하는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열공급규정에 의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년 월 일				

년 월 일

지역난방열 사용자 (갑) : (인)

지역난방열 사업자 (을) : 무림파워텍(주) 대표이사 (인)

별지 제5-2호 서식
(업무용, 공공용)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서

제 호

지역난방열 사용자 (이하 "갑"이라 함)	① 건 물 명	
	② 주 소	
	③ 성 명 (대표)	
지역난방열 사업자 (이하 "을"이라 함)	④ 주 소	
	⑤ 성 명 (상호)	무림파워텍(주)

위 갑·을 양자간에 지역난방 열수급계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고 계약체결의 증거로서 본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쌍방 기명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합니다.

⑥ 열사용시설명		⑦ 계약종별		⑧ 기 계 실 수	
⑨ 열사용시설소재지					
⑩ 연결 열부하	Mcal/h	⑪ 열사용용도	<input type="checkbox"/> 난방, 급탕용 <input type="checkbox"/> 냉방용		
계 약 용 량	Mcal/h	⑬ 열수급장소	거래용 열량계가 설치되는 갑의 기계실내		
⑫ 열수급 예정일	년 월 일	⑯ 재산한계점	갑의 부지내 을이 설치한 열수송관의 갑측단말 (다만, 거래용열량계, 열수송관 누수감지설비 및 신호전송장치 등은 을의 소유임)		
⑭ 계 약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검 침 일	매 월 일	안전 및 유지 보수 책임한계	재산한계점과 동일		
열요금납기일	검침의월 일	열요금의 적용	열공급규정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기 타 사 항	(1) 계약기간내에 본 계약에 대하여 갑·을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후에도 1년마다 동일조건으로 계속되는 것으로 봅니다. (2) 갑은 을이 열공급을 하기 위한 열공급시설공사와 사용자 상호간의 열공급관 연결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갑의 도로, 녹지 등 토지와 기계실, 지하주차장 및 공동구 등을 을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여야 합니다. (3) 갑은 을이 부과하는 공사비부담금 및 열요금을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열공급규정에 의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갑·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합니다.				

년 월 일

지역난방열 사용자 (갑) : (인)

지역난방열 사업자 (을) : 무림파워텍(주) 대표이사 (인)

[별지 제 6호 서식]

점 검 필 증			
사 용 자	① 상 호 (명 칭)		
	② 주 소 (소재지)		
	③ 대 표 자 성 명	④ 전화번호	
⑤ 점검대상 열사용시설 소 재 지			
⑥ 점검대상 열사용시설			
⑦ 점 검 년 월 일			
⑧ 점 검 자	소 속		성 명 (인)
<p style="margin: 0;">집단에너지사업법 제 25조 제 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37조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열사용시설에 대한 점검결과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었기에 이를 교부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무림파워텍(주) 대표이사 (인)</p>			